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고단3361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4고단33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피고인 A

검사 민수영(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1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4. 08:26경 용인시 기흥구 C, 101동 204호(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산콜센타 120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원인 피해자 E에게 "어디서 여관에서 씨발 몸 파는 년인가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 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산콜센타 상담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전후 맥락, 전체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화상담원과 통화를 하던 중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민병국